

G-Welfare Weekly Report

01

현안브리프

1. 노인일자리 확대에 따른 경기도의 역할

01 최근 동향

- 보건복지부는 2019년에 예산 1조 6천 487억원을 투입하여 노인일자리 61만개를 공급하겠다고 발표
 - 노인일자리란 소득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일자리로서 공익활동, 재능나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시니어 인턴십 등이 있음
- 2019년 노인일자리사업의 주요한 변화는 일자리 확대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2만개) 신설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과 같은 취약계층 지원 시설에서 급식·교육 및 환경정비 등의 활동을 하며 월 60시간 활동기준 54만 원(주휴수당 등 별도) 지급
- 2019년부터는 사업 시작시기, 수당 및 임금 지급시기, 참여자격 완화 등도 일부 개선
 - 노인일자리 사업시기가 3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으며, 급여일이 매월 말일로 조정
 - 65세 이상으로 한정되었던 공익활동의 일자리의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60~64세도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장형 사업단 참여 신청 시 가점 부여
 - 이는 소득 하위계층의 절대 다수가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60~64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일자리 참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것
- 노인일자리 확대는 제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양코르 라이프 플랜(2018~2022))에 따른 조치
 - 양코르 라이프 플랜은 제1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의 한계로 지적된 양적 위주의 확대로 근로여건, 활동내용의 개선 필요와 저소득·고령 노인 대상의 일자리로 근로능력과 의사가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 부족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 ‘보람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4개 정책과제인 ①참여자 역량강화 및 보호, ②인프라 강화, ③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④사회공헌 일자리지원을 목표로 함
-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시작되었으며, 규모면에서 2004년, 35,127개 일자리에서 2016년 429,726개로 12.2배 증가
 - 노인복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인일자리 유형은 점차 다양화되어 '11년에는 시장자립형일자리가 신설되고, '14년에는 재능나눔활동 등으로 세분화됨
 - 노인일자리사업의 시행은 노인빈곤감소, 건강증진, 사회관계 증진 등의 정책적 효과와 함께 활동비 인상*에 따른 참여노인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을 비롯하여 노인관련 기관 총 1,242개소
 - 시니어클럽(141개소), 노인복지관(242개소), 종합사회복지관(189개소), 대한노인회(195개소), 지자체(160개소) 등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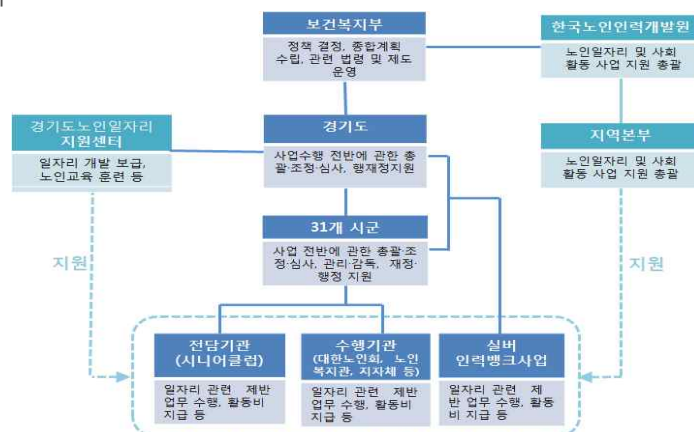
*20만원(2004년) → 21만원
→ 27만원(2017년)

02 주요 문제

- 공익활동 내용의 획일화** :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의 비율은 전국 75.7%으로, 노인일자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요활동이 단순노무직으로 획일적으로 운영
 - 2006년 본격적으로 노인일자리가 시행된 이후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비교적 업무가 단순한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단순노무직으로 진행
 - 노인일자리 규모만 확대되었을 뿐 공익활동은 공공시설 봉사가 대부분을 차지
 - 단순노무직은 참여노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다양한 영역의 사회참여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공익활동 수당 증액으로 인한 시장형일자리 급여와 공익활동 수당의 역전현상 발생**
 - 2007년부터 2016년까지 20만원으로 동결되었던 공익형일자리 월평균임금이 2017년 22만원에서 2018년 27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22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
 - 이와 대조적으로 시장형사업단의 월 평균 임금은 하향세로, 시장형일자리 평균 급여는 26만원(2017년) 수준임
 - 참여노인의 업무량이 많은 시장형사업단의 급여보다 단순한 일자리인 공익활동의 활동비가 높아짐에 따라 시장형사업단의 활성화를 저해
 - 시장형사업단은 자체 수입으로 일정부분 인건비를 충당하지만 공익활동은 전적으로 조세에 의존한 일자리라는 점에서 공익활동 활동비에 대한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노인일자리 수는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할 인력은 확충되지 않아 업무 과중이 심화**
 - 지침에는 공익활동과 시장형사업단 참여노인 154명당 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2017년)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 실제 운영은 160명당 1명(2016년 기준)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노인일자리 확대에 따라 전담인력의 업무 과중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또한 공익활동의 전담인력의 업무와 시장형사업단의 전담인력의 업무의 성격과 내용이 상이함에도 참여노인의 수는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 현실성이 부족

03 경기도 현황

- 경기도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총 166개소**
 - 시니어클럽 16개소,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37개소, 실버인력뱅크31개소, 노인복지관 4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3개소, 지자체 16개소, 기타 12개소가 운영
 - 특히 경기도에는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실버인력뱅크가 사업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존재



〈그림〉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구성도

-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장형사업단보다 공익활동을 중심으로 진행
 -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은 2006년 93개소에서 2017년 152개소로 증가하였고, 시장형 사업단을 운영하는 수행기관은 2006년 25개소에서 2017년 68개소로 증가
 - 공익활동 사업단수는 2006년 248개에서 2017년 840개로, 시장형사업단수는 2006년 45개소에서 2017년 274개소로 크게 증가
 - 공익활동 참여노인수는 2006년 7,592명에서 48,913명으로, 시장형사업단 참여노인수는 2006년 298명에서 2017년 7,298명으로 증가

〈표〉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분포(2017년)

구분	공익활동(840개, 75.4%)				시장형사업단(274개, 24.6%)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전문서비스형
사업단수	197	45	491	107	42	171	61
비율	17.7	4.0	44.1	9.6	3.8	15.4	5.5

(단위 : %)

- 2017년 노인일자리사업의 총 누적참여노인 수는 56,211명이며 경기도 수행기관 1개소 당 참여노인 수는 429명임
 - 시니어클럽이 가장 많은 647명, 지자체가 513명, 실버인력뱅크가 427명 순으로 나타났고,
 - 수행기관 1개소 당 공익활동 참여노인이 많은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 397명, 실버인력뱅크 374명이며, 시장형사업단 시니어클럽이 250명, 지자체 158명으로 참여노인 수가 많음

04 경기도의 대응 및 개선 방안

- 경기도는 시장형사업단 확대와 중앙정부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확대 정책의 실현을 위한 수행체계 개선이 필요
 - 경기도 시니어클럽은 15개 시·군에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은 지역적 제한이 발생하여 확대 설치가 필요하며, 이는 기존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실버인력뱅크의 기능 전환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
 - 시니어클럽으로의 기능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니어클럽 예산 부담구조 개편을 통해 사군에 부담 최소화 필요(현행 도:기초의 부담비율 10:90 → 50:50으로 조정)
 - 또한, 시니어클럽의 운영비 부담구조도 30:70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운영에 대한 시군의 부담 완화를 통해 시니어클럽으로의 전환을 유도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사업 추진의 기반을 강화
- 노인일자리 사업량의 확대를 고려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 제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및 노인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현행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수용력은 한계치에 도달
 - 노인일자리 사업량 확대에 따른 수행기관은 점증적으로 확대하되, 기존의 복지관, 대한노인회 외 자활기업, 사회적경제 조직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확대 필요
-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
 - 경기도 내 수행기관의 상당 부분이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채 단순 일자리 매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일자리 사업추진의 효율성, 효과성 발휘 미흡
 - 실제 전담기관이 있는 수행기관과 없는 기관과의 비교 시 사업이 실적 및 효과성 등이 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
 - 일자리 수행기관은 전담 인력기관을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배치된 인력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지원

02 중앙정부 정책동향

1. 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01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

1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율(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하고 4만 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특례 대상자 3,250여 명 예정)

3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을 지원

〈표〉 기초수급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정부지원금 종류

구분	대상자	대상자수	지원금액	소관부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 중인 청년으로 최대 6개월 지급	8만여 명	50만 원/월	고용부
자립성과금*	수익금 발생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7,400여 명	최대60만 원 /분기	복지부
시설퇴소아동 자립수당	시설 보호종료 후 2년간 지급	4,900여 명	30만 원/월	복지부

* 청년층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사업단(자활사업 참여자)에 적용됨

- 또한,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 원 추가하여 소외받기 쉬운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기존) 40만 원 + 30% → (변경) 50만 원 + 30%)

4 가구특성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학생이 있을 경우, 기존 수업료 등 학비 공제에 추가하여 학업을 위해 소요되는 기숙사비용(월세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

* 해당 비용이 발생하는 부양의무자가구는 학생 1인당 월 최대 23만3000원을 실제소득에서 차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제도의 사각지대로 누락되기 쉬운 가정위탁아동, 시설거주 청소년,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 등에 대한 특례 적용 규정을 명확히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 가정위탁아동 : 친권자의 일회성 지원 등 단편적 사실을 부양관계 회복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규정
- 시설거주 청소년 : 여성가족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생계비지급 근거 및 기준 신설
- 형제자매로 구성된 2인 수급 가구(舊 소년소녀가정)중 1인이 취업을 하여 소득 발생시
 - (기존)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약 87만 원 이상 소득 발생시 2인 모두 생계급여 수급 중지
 - (변경) 취업한 대상자가 34세까지 최대 7년간,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수급 유지

• 보건복지부는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이나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군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협조를 당부

02 중앙정부 정책동향

2. 복지부, 아동학대 문제 전담하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01 주요 내용

-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 '아동학대대응과' 가 신설
 -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에 대한 의지를 표명

〈표〉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편
조직	아동학대대응팀	아동학대대응과
인력	5명	10명(5명 순증)
기구		

- 그간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자수는 증가 추세
 -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5년, 1만9천 건에서 '16년, 3만 건 그리고 '17년, 3만4천 건이며,
 -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자수도 '15년, 16명에서 '17년에는 38명으로 증가

〈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건 수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신고건수	10,943	13,076	17,791	19,214	29,674	34,169
최종 학대 판단건수	6,403	6,796	10,027	11,715	18,700	22,367
아동학대 증가율(%)	-	6.14	47.54	16.83	59.62	19.6

* (단위: 건 %)

- 반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

* 아동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판단건수 : 미국 9.4%, 호주 8%, 프랑스 3.94%

- 이번에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는 지자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할 예정
 - 또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협조), 여성가족부(부모 교육), 경찰청(수사 협조) 파견 인력을 운용하여 범정부 역량을 모으고,
 - 향후 아동학대 발견율을 2022년까지 4%까지 높이는 동시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간다는 방침

02 경기도 시사점

- 2017년 말 기준, 경기도 내 아동학대 신고건 수는 7,707건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
 - 교직원, 시설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도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감독을 강화
- 아동학대 관련 조사와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등)의 협조체계를 갖추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역할 강화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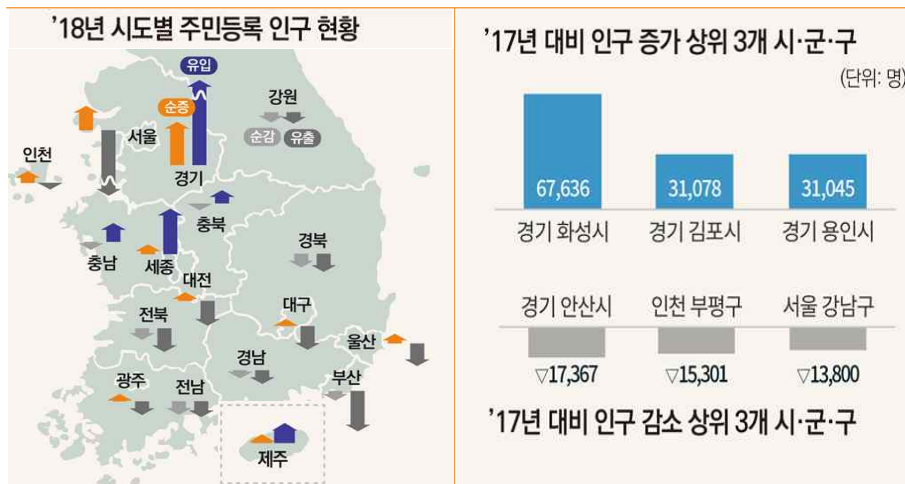
03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2018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 현황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8년 말, 주민등록인구를 바탕으로 인구 구성 및 지역별 증감을 살펴봄

- '18년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6,059명으로, 전년 대비 47,515명(0.1%) 증가
 - 0세에서 14세 인구는 12.8%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14.8%를 차지
 - 50대가 8,615,884명(16.6%)으로 가장 많아 한국인의 평균연령이 42세로 나타남
- '17년과 비교하여 경기(203,253명), 세종(34,026명), 제주(10,108명), 충남(9,512명), 인천(6,100명), 충북(4,820명) 6개 시도의 인구가 증가
 - 서울(△91,803명), 부산(△29,200명), 전북(△17,775명), 경북(△14,875명), 대구(△13,462명), 전남(△13,454명) 등 11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
- 인구가 증가한 지역 중 경기, 세종, 제주는 자연적 인구 증가와 타 시도로부터 순유입이 많음
 - '17년보다 인구가 감소한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광주 포함 5곳은 자연적 인구는 증가하였으나 타 시도로의 순유출이 많음
- 시·군·구에서 '17년 말보다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경기 화성(67,636명), 김포(31,078명), 용인(31,045명) 등을 포함한 63곳
 - 경기 안산(▽17,367명), 인천 부평(▽15,301명), 서울 강남(▽13,800명) 등을 포함한 163개 지역의 인구는 감소

〈표〉 지역별 인구 증감 현황



*인구 증감 표기

자연적 증감 (출생-사망)

사회적 이동 (전입-전출)

- 인구변동 요인 중 사회적 인구 이동(전입-전출)은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교통여건 등 지역의 경제·사회적 여건과 맞물린 것으로 인구 유입 대책과 지역적 격차 해소가 필요

2. 재단 주요사업 안내

사업명	주요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19. 1.23.(수)~01.25.(금) • 해당시군 :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연천군, 이천시 등 • 내 용 : 2019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 문 의 : 정책연구실 사회정책팀(☎898-5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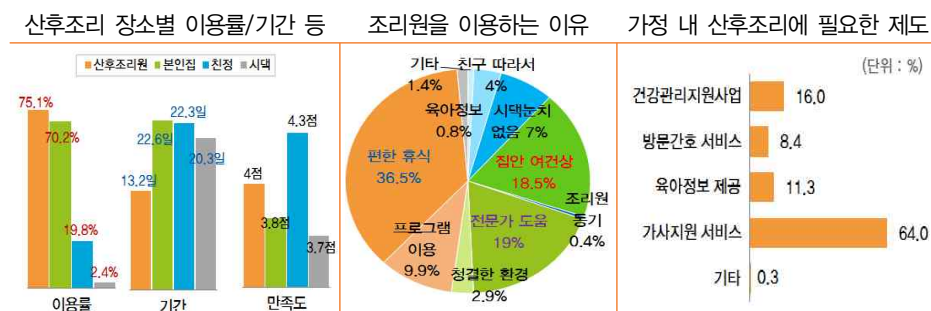
04 FACT CHECK

국민연금서 노후긴급자금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이른바 '실버론' 대부 한도를 기존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11일 발표
 - 실버론은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빌려주는 사업
 -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때 신용도가 낮아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인층의 대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12년 5월부터 시행
 - 실버론 금리는 5년 만기 국고채권 평균수익률이고, 연체 이자율은 금리의 2배이며, 올해 1분기 기준 2.05%로 지난 분기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짐
- 공단에 따르면, 2012년 5월 실버론 시행 후 2018년 10월 현재까지 6년여 간 총 5만970명이 2천244억원을 대출
 - 전·월세자금이 3만339건(60.2%)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 1만9141건(38%), 장제비 695건(1.4%), 재해복구비 200건(0.4%)의 순
- 실버론은 단기적 긴급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나, 대출 비용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연금에서 공제되는 등 노후대책자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존재
 - 실버론을 운영하되, 노후 연금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대부 한도를 정하고, 개인 국민연금 월 수혜금액 중 적정 수준의 감가 비율을 책정하는 등의 관리 방안이 중요
 - 또한 미상환자 관리 업무 등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대상자 수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필요

05 통계로 보는 복지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1.16.),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출산 후 6주 동안(산육기)의 산후조리 장소로 응답자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
 - 산후조리 이용기간은 본인집이 가장 길며(22.6일), 만족도는 친정이 가장 높음(4.3점)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이유는 '육아에 시달리지 않고 편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서'가 36.5%로 가장 많고, '육아전문가에게 육아방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18.7%) 순
 - 반면, 집에서 산후조리를 한 경우, 가사육아도우미 지원(64.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16.0%)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